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. 1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1.10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.1.11.
- 다. 상정일자 : 제20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7.1.1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생활체육과장 조충연

가. 제안이유

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반영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단체명 변경(제7조 및 제11조)

- 제7조 제2호 『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』 ⇒ 『마포구체육회』

- 제11조 제1항 제2호 『대한체육회』 ⇒ 『통합체육회』

2) 사용료 징수 근거 및 감면 기준 명확화(제11조)

- 제11조 제1항 제1호의 『사용료』 ⇒ 『개인사용료』

-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『장애인의 보호자』

⇒ 『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』

- 제11조 제1항 제2호의 『사용료』 ⇒ 『전용사용료』

- 제11조 제1항 제3호의 『사용료』 ⇒ 『전용사용료』

3)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삭제 및 추가(제11조)
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규정 신설(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)

-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 규정 삭제(제11조 제1항 제2호 다목)

4) 볼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및 범위 변경(별표 3, 전용사용료의 범위)

- 볼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변경 : 1시간 1레인 ⇒ 2시간 2레인

- 볼링장 전용사용료의 범위 변경(최소·최대금액 조정)

개정 전	개정 후
주중 : 30,000 ~ 50,000	평일 : 50,000 ~ 70,000
토요일공휴일 : 35,000 ~ 65,000	토요일공휴일 : 60,000 ~ 80,000

5) 성미산체육관과 망원유수지 풋살장 사용료 관련 규정 신설(별표 1~4)

- 사용료의 범위 대상 추가

• 성미산체육관 : 기존 구립 체육시설 중 유사한 것을 준용

• 망원유수지 풋살장 : 30,000원 ~ 80,000원(1면당 2시간 기준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마포구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“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”를 “마포구체육회”로 명칭을 변경하고,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 10조 등에 따라 관내 거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, 불링장 전용사용료의 기준 및 범위를 변경하고, 망원유수지 풋살장 사용료 관련 규정의 신설 등에 따라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